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유선 및 도선사업 체계를 면허사업 체계로 일원화 등〉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1721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문위원 서기영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1. 제안이유	1
2. 주요내용	2
III. 검토의견	4
1. 유선 및 도선사업 체계 개편 및 유선사업의 범위 확대 등	4
2. 유·도선 운항 제한 권한 주체 확대 및 행정처분에 관한 규정 개선 등 ·	17
3. 유·도선사업자 안전운항의무 개선 등	21
4. 유·도선사업자 안전관리대책 수립 의무 및 안전관리자 지정 제도 도입 등	26
5. 유·도선 현대화계획 수립·시행 및 선령기준 적합성 심사 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	33
6. 보험 가입 의무 강화, 벌칙 및 과태료 규정 정비 등	37

I. 제안경위

1. 제 출 자 : 정 부
2. 제출연월일 : 2024. 7. 12.
3. 회부연월일 : 2024. 7. 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유선 및 도선사업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유선 및 도선사업의 체계를 면허사업으로 일원화하고, 유선 및 도선사업자의 유·도선 안전점검 결과 기록·관리, 안전관리 대책 수립 및 안전관리자 지정 의무를 신설하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유·도선 현대화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유선 및 도선사업자의 영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유선 및 도선사업자가 면허받은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만 변경면허를 받도록 하고, 박람회 등과 관련하여 단기간 유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정면허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선사업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1호)

새로운 사회적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고기잡이 및 관광 등으로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는 유선사업의 범위에 체험, 축제 및 기념행사 등을 추가하여 유선사업의 범위를 확대함.

나. 유선 및 도선사업 체계를 면허사업으로 일원화(안 제3조제1항)

현행 유선 및 도선사업의 체계를 선박의 규모와 영업구역에 따라 면허사업과 신고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사업의 규모에 따른 시설기준 적용상의 차이만 있을 뿐 유선·도선의 선령 기준 및 유선·도선사업자의 결격사유 등 기본적인 사항을 면허사업과 신고사업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면허사업과 신고사업을 구분하여 운영할 실효성이 크지 아니하므로, 유선 및 도선사업의 안전 및 편의시설 확보 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유선 및 도선사업 체계를 면허사업 체계로 일원화함.

다. 박람회 등을 위한 유선사업에 대하여 한정면허 도입(안 제3조제2항)

시·도지사 등 관할관청은 단기간 개최되는 박람회 등의 행사와

관련하여 유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유선사업 면허를 할 수 있음.

라. 유선 및 도선의 안전관리 강화(안 제12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안 제21조제3항·제4항 및 제21조의2 신설)

1) 유선 및 도선사업자는 유선 및 도선의 안전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함.

2) 유선 및 도선사업자는 유·도선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3) 유선 및 도선사업자는 유선 및 도선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알려야 하며, 안전관리자가 유선 및 도선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함.

마. 유·도선 현대화계획 수립(안 제30조의3 신설)

유선 및 도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유·도선 현대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Ⅲ. 검토의견

1. 유선 및 도선사업 체계 개편 및 유선사업의 범위 확대 등

개정안은 유선사업의 범위에 체험·공연·축제·연회 및 기념행사를 추가하고, 현재 규모에 따라 면허사업과 신고사업으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는 유·도선 사업 체계를 면허사업으로 일원화하며, 유선사업의 면허를 발급받은 자가 박람회·축제·체육·공연행사 등 행사에 참여하려는 경우 3개월의 범위 안에서 면허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정면허제도를 도입하고, 유·도선 사업 결격사유 적용법률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3조 및 제6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② (생략) 1. “유선사업”이란 유선 및 유선장(遊船場)을 갖추고 수상에서 고기잡이, 관광, 그 밖의 유락(遊樂)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② (현행과 같음) 1. “유선사업”이란 유선 및 유선장(遊船場)을 갖추고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또는 행사를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이 아닌 것을 말한다.

현행	개정안
2. “도선사업”이란 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내수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목에서 사람을 운송하거나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 6. (생략) 제3조(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 ①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이하 “유·도선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도선의 규모 또는 영업구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면허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가. 체험, 공연, 축제, 연회 및 기념행사 나. 고기잡이, 관광, 그 밖의 유락(遊樂) 2. ----- ----- ----- ----- ----- 「해운법」 제2조제2호·제3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및 해상화물운송사업이 아닌 ----- -----. 3. ~ 6. (현행과 같음) 제3조(사업의 면허) ①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이하 “유·도선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할관청(이하 “관할관청”이라 한다)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유·도선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유·도선사업자”라 한다)가 면허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현행	개정안
1. 유선장 및 도선장(이하 “유·도선장”이라 한다) 또는 영업구역이 내수면과 해수면에 걸쳐 있거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유·도선을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 2.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다만, 영업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고 운항거리가 5해리 이상인 경우에는 시·도지사, 운항거리가 5해리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유·도선을	1. 유선장 및 도선장(이하 “유·도선장”이라 한다) 또는 영업구역이 내수면과 해수면에 걸쳐 있거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유·도선을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 2.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 가. 영업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쳐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운항거리가 5해리 이상인 경우: 해당 유·도선을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나. 가목 외의 경우: 해당 유·도선을 주로 매어두는 장

현행	개정안
<u>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u> 3. <u>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 해당 유·도선을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u> 4. <u>서울특별시의 한강에서 운항하는 유·도선의 경우: 서울특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 중 유·도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u> ② <u>제1항 각 호에 따라 면허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관할관청(이하 “관할관청”이라 한다)은 유·도선사업의 면허를 발급하거나 신고를 수리(受理)할 때에 그 영업구역이 내수면과 해수면에 걸쳐 있거나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서장과 미리 협의하여야</u>	<u>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u> 3. <u>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 해당 유·도선을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u> 4. <u>서울특별시의 한강에서 운항하는 유·도선의 경우: 서울특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 중 유·도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u> ② <u>관할관청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면허를 할 때 박람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와 관련된 유선사업의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면허(이하 “한정면허”라 한다)를 할 수 있다.</u>

현행	개정안
하며, 유·도선장이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할관청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할관청은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수리여부를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신고의 경우 7일,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의 경우 5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관할관청은 유·도선사업의	③ 제1항에 따라 유·도선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면허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라 유·도선사업의 면허를 할 때에 그 영업구역이 내수면과 해수면에 걸쳐 있거나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서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유·도선장이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라 유

현행	개정안
면허를 발급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서장, 공원관리청, 경찰서장, 지방해양항만관서의 장과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도선사업만 해당한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⑥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발급할 때에 유·도선의 안전강화 및 편의시설 확보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4조의2(면허의 기준) ① 관할관청은 유·도선사업의 면허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면허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 도선사업의 면허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서장, 공원관리청, 경찰서장, 지방해양항만관서의 장과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도선사업만 해당한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⑥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라 유·도선사업의 면허를 할 때에 유·도선의 규모와 영업구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도선사업의 경우에는 유·도선의 안전강화 및 편의시설 확보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4조의2(면허의 기준) 관할관청은 유·도선사업의 면허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면허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현행	개정안
<u>같다.</u> 1. 유·도선사업 면허 신청자가 <u>보유한 유선 또는 도선의 선령(船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u> 2. 유·도선사업 면허 신청자가 <u>보유한 선박과 시설·장비·인력이 제4조의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u> <u>② 관할관청은 유·도선사업을 신고하려는 자가 보유한 선박의 선령이 제1항제1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u> <u>제6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유·도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다.</u> 1. <u>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u> 2. 이 법, 「선박안전법」, 「선	1. 유·도선사업 면허 신청자가 <u>보유한 유선 또는 도선의 선령(船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u> 2. 유·도선사업 면허 신청자가 <u>보유한 선박과 시설·장비·인력이 제4조의 시설기준 등에 적합할 것</u> 3. 유·도선사업 면허 신청자가 <u>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u> <u>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유·도선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u> 1. <u>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u> 2. 이 법, 「물환경보전법」,

현행	개정안
<u>박법</u>」, 「<u>선박직원법</u>」, 「<u>선원법</u>」, 「<u>해상교통안전법</u>」, 「<u>물환경보전법</u>」 또는 「<u>해양환경관리법</u>」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u>「선박법」</u>, 「<u>선박안전법</u>」, 「<u>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u>」, 「<u>선박직원법</u>」, 「<u>선원법</u>」, 「<u>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u>」, 「<u>해상교통안전법</u>」, 「<u>해양환경관리법</u>」, 「<u>해운법</u>」 또는 「<u>항만법</u>」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u>선박안전법</u>」, 「<u>선박법</u>」, 「<u>선박직원법</u>」, 「<u>선원법</u>」, 「<u>해상교통안전법</u>」, 「<u>물환경보전법</u>」 또는 「<u>해양환경관리법</u>」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이 법, 「<u>물환경보전법</u>」, 「<u>선박법</u>」, 「<u>선박안전법</u>」, 「<u>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u>」, 「<u>선박직원법</u>」, 「<u>선원법</u>」, 「<u>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u>」, 「<u>해상교통안전법</u>」, 「<u>해양환경관리법</u>」, 「<u>해운법</u>」 또는 「<u>항만법</u>」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제9조제1항에 따라 유·도선 사업의 면허가 취소(이 항 제	4. 제9조제1항에 따라 유·도선 사업의 면허가 취소(이 항 제1

현행	개정안
<u>1호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u> <u>5.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u> <u>② 제9조제1항에 따라 유·도선사업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사업이 폐쇄(이 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사업이 폐쇄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고는 제3조에 따른 유·도선사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u>	<u>호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u> <u>5.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u>

현행법은 ① 유선사업의 범위를 고기잡이, 관광, 그 밖의 유락(遊樂)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② 유·도선 사업을 하기 위한 요건으로 면허와 신고를 구분하여 선박의 총톤수가 5톤 이상인 경우, 5톤 미만 선박 중 승객 정원이 13인 이상인 경우 및 영업구역이 2해리(3.7km) 이상인 경우에는 면허 대상으로, 그 외의 소규모 선박의 경우에는 신고 대상으로 분류¹⁾하고 있으며, ③ 「선박안전법」·

1) 유·도선 사업의 면허 및 신고 대상 구분기준(시행령 제3조)

「선박법」·「선박직원법」·「선원법」·「해상교통안전법」·「물
환경보전법」·「해양환경관리법」등 유·도선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법률에 따라 형벌을 받은 경우를 유·도선사업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① 유선의 정의에 ‘체험·공연·축제·연회 및 기념행사’
를 추가하여 유선사업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현행 “유선”, “도
선”, “여객선” 등이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운항형태를 법 제도하
에 두어 영업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②
유선 및 도선 사업의 체계를 면허사업으로 일원화함으로써 각기
다른 제도의 운영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며, ③ 박람회 등 일정
기간에만 영업이 필요한 경우에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면허할 수 있도록 하는 한정면허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④ 유·도선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법률인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항만법」·「해운법」을 유·도선 사업
결격사유 적용법률로 추가하여 건전한 유·도선사업 발전을 저해
하는 요소를 제거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다만, 면허사업으로의 일원화 및 한정면허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면허 대상	신고 대상
1. 총톤수가 5톤 이상인 선박 2. 총톤수가 5톤 미만인 선박 중 승객 정원이 13명 이상인 선박 3. 유·도선사업의 영업구역이 2해리 이상인 경우	면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유·도선사업

여서는 다음의 사항을 함께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면허제도는 행정청이 특정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한 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금지를 해제하여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제도로, 허가행정관청의 자의적 판단을 방지하고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허가요건을 법령에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반면 신고제도는 행정청에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로서 형식적 요건만 갖추어 제출하면 적법한 경우와 완화된 의미의 허가에 해당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음.

행정안전부는 선박의 규모와 운항거리에 따라 면허사업과 신고사업을 구분하고 있을 뿐 신고사업이라 하여 별도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현행법령은 관할관청이 면허를 발급할 때에 유·도선의 안전강화 및 편의시설 확보 등을 위하여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건²⁾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면허에 대해서는 선령(船齡) 외에도 선박·시설·장비·인력에 관하여 별도의 심사 기준³⁾을 적용하

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 ⑥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발급할 때에 유·도선의 안전강화 및 편의시설 확보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2(유·도선사업의 면허조건) 관할관청은 유·도선사업의 면허를 발급할 때에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1. 해당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유선 및 도선(이하 “유·도선”이라 한다)의 안전 제고를 위하여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주차장, 승객 대기시설 및 화장실 등 승객 편의시설 확보에 관한 사항

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신고 대상으로 분류되던 유·도선에 새로운 조건이 붙거나 기준이 적용되어 사실상 규제가 강화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됨.

따라서, 유·도선 사업의 면허제로의 일원화 여부에 관하여는 단순히 관리·운영의 통일성 및 편의성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신고 대상 선박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 및 기존 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한정면허 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현행법은 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을 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연중 한시적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로 유효기간을 제한하는 규정⁴⁾을 두고 있어 이미 한정면허 발급과 유사한 취지가 달성 가능하다는 점, 단기목적으로 일시적인 면허의 발급을 필요로 하는 한정면허 대상의 특성상 준비기간 부족으로 인해 신속한 면허발급이 필요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이나 개정안은 한정면허의 유효기한만 제한할 뿐 면허절차의 간소화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고 있다

3)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4조의2(면허의 기준) ① 관할관청은 유·도선사업의 면허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면허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유·도선사업 면허 신청자가 보유한 유선 또는 도선의 선령(船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

2. 유·도선사업 면허 신청자가 보유한 선박과 시설·장비·인력이 제4조의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② 관할관청은 유·도선사업을 신고하려는 자가 보유한 선박의 선령이 제1항제1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5조(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 ① 제3조에 따른 유선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하되, 연중 한시적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로만 하며, 도선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은 영구로 하되, 연중 한시적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존의 면허 제도에 추가적으로 한정면허 제도를 도입해야 할 실익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됨.

2. 유·도선 운항 제한 권한 주체 확대 및 행정처분에 관한 규정 개선 등

개정안은 ① 유·도선의 운항이 허용된 경우에도 해당 영업구역의 실제 기상상태를 확인하여 안전운항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할 때 운항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로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를 추가하고, ② 행정처분의 유형 중 사업폐쇄를 삭제하며, ③ 운항 제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면허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④ 위반 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관계법령 중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9조).

현행	개정안
제8조(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등) ① ~ ⑤ (생략) ⑥ <u>시장·군수·구청장</u>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제5항에 따라 운항이 허용된 경우에도 해당 영업구역의 실제 기상상태를 확인하여 안전운항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유·도선의 운항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u>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u> ----- ----- ----- ----- -----.
제9조(행정처분) ① 관할관청은 유·도선사업자가 다음 각 호	제9조(행정처분) ① ----- -----

현행	개정안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업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u>그 사업의 폐쇄 또는 3개월</u>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u>제6조제1항 각 호</u>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인이 <u>제6조제1항제5호</u>에 해당하는 경우에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하여 임명한 경우 나. 유·도선사업자의 상속인이 <u>제6조제1항제1호</u>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유·도선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 ----- <u>3개월</u> ----- ----- -----. -----. 1. <u>제6조 각 호</u>----- -----. -----. 가. ----- <u>제6조제5호</u>----- ----- ----- ----- 나. ----- ----- <u>제6조제1호</u>----- ----- ----- ----- -----.

현행	개정안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5. 「선박안전법」, 「선박법」, 「선박직원법」, 「 <u>물환경보전법</u> 」, 「 <u>해양환경관리법</u> 」,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5. ----- ----- 「 <u>물환경보전법</u> 」 또는 「 <u>해양환경관리법</u> 」 -----
6. 제3조제1항, 제3조의3제3항, 제7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 34조제1항·제2항에 따른 신 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로 신고를 한 경우	6. 제3조의3제3항----- ----- ----- ----- -----
7. 7의2. (생략) <u><신설></u>	7. 7의2. (현행과 같음) 7의3. 제8조제4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기상특보 발효 시 유 ·도선을 운항하거나 유·도선 의 운항제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8. 제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선령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 우	8. 제4조의2제1호----- ----- -
② 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경찰 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도선 사업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폐쇄 또는 정지를 명하려면 미리 관 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 ----- ----- 사업 의 일부 또는 전부의 ----- ----- -----.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① 시장·군수·구청장이 기상악화를 고려하여 유·도선의 운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② 관할관청이 유·도선 사업자가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취소, 사업폐쇄 또는 사업정지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며, ③ 처분 사유 중 하나로 「선박직원법」·「선박법」·「선박안전법」·「물환경보전법」·「해양환경관리법」,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① 관할 구역에 시·군·구가 없는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도 운항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② 사업폐쇄는 사적 자치의 영역이며 면허취소로도 유사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으므로 행정처분의 유형에서 제외하며, ③ 처분 사유 중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는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광범위하므로 제재요건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삭제하고, ④ 운항 제한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를 위반한 경우도 행정처분 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3. 유·도선사업자 안전운행의무 개선 등

개정안은 ① 유·도선사업자와 선원으로 하여금 선박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② 유·도선의 승객에게도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며, ③ 차량을 운송하는 도선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16조 및 제 18조).

현행	개정안
제12조(유선사업자 등의 안전운행의무) ① 유선사업자와 선원은 선박의 안전을 점검하고 기상 상태를 확인하는 등 안전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승객에게 위해(危害)가 없도록 수면(水面)의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유선을 조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유선사업자 등의 안전운행의무) 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의 안전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기상 상태를 확인하는 등 안전 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② 유선사업자와 선원은 다음 각 호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매 뉴얼로 작성하여 유선장 및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유선의 선실이나 통로에 비치하고 출항하기 전에 승객에게 영상물 상영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 ---. ② ----- ----- ----- ----- ----- - <u>비치하여야 하고</u> , ----- -----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안내하여야</u> -----.

현행	개정안
1. ~ 5. (생략) ③ (생략) ④ 유선사업자와 선원은 <u>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형 유선의 경우에는 승객 등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u> ⑤ 유선사업자, 선원, 그 밖의 종사자는 유선 및 유선장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11. (생략) <u><신설></u> <u><신설></u> 제16조(도선사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① 도선사업자와 선원은 선박의 안전을 점검하고 기상 상태를 확인하는 등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승객과 적재물에 피해가 없도록 수면의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도선을 조종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u>안전운항과 승객의 안전</u>----- ----- <u>유선</u>----- ----- ----- -----. ⑤ ----- ----- ----- -----. 1. ~ 11. (현행과 같음) 12. <u>유선사업의 면허를 받은 유선장이 아닌 곳에 유선을 매어두는 행위</u> 13. <u>유선사업의 면허를 받은 유선장이 아닌 곳에서 승객을 승선·하선시키는 행위</u> 제16조(도선사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① -----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의 안전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기상 상태를 확인하는 등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u>----- -----.

현행	개정안
② 도선사업자와 선원은 다음 각 호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매 뉴얼로 작성하여 도선장 및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도선의 선실이나 통로에 <u>비치하고</u> 출항하기 전에 승객에게 영상물 상영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u>안내하여야</u> 한다. 1. ~ 5. (생략) ③ (생략) ④ 도선사업자와 선원은 <u>안전운항</u>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형 도선의 경우에는 승객 등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u><신설></u>	② ----- ----- ----- ----- <u>비</u> <u>치하여야</u> 하고, ----- <u>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하여</u> <u>야</u> -----. 1. ~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u>안전운</u> <u>항과 승객의 안전</u>----- ----- ----- ----- -----. ⑤ <u>차량을 운송하는 도선사업</u> <u>자와 선원은 안전운항을 위하</u> <u>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u> <u>야 한다.</u> 1. <u>운항 전 적재된 차량의 엔진</u> <u>정지 확인</u> 2. <u>차량 적재 후 승객의 차량 탑</u> <u>승 금지</u> 3. <u>승객과 차량의 승선·하선 질</u> <u>서유지</u>

현행	개정안
제18조(승선 또는 선적의 제한 등) ① 도선사업자, 선원, 그 밖의 종사자는 도선과 도선장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8. (생략) <u><신설></u> <u><신설></u> ② (생략)	제18조(승선 또는 선적의 제한 등) ① ----- ----- ----- ----. 1. ~ 8. (현행과 같음) 9. <u>도선사업의 면허를 받은 도선장이 아닌 곳에 도선을 매어두는 행위</u> 10. <u>도선사업의 면허를 받은 도선장이 아닌 곳에서 승객을 승선·하선시키거나 물건을 싣고 내리는 행위</u> ②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① 유·도선사업자와 선원에게 선박의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② 5톤 미만의 유·도선의 사업자 및 선원에게 구명조끼 착용의무를 부여⁵⁾하고 있으며, ③ 유·도선사업자, 선원 등 종사자의 금지행위로 초과 승선, 운임 외 금품 요구, 정당한 사유 없이 승선 거부 등을 규정하고 있고, ④ 도선에 선적된 차량에 대한 조치의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개정안은 ① 선박의 안전점검 의무만 부여하여 제도 이행의 실

5)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10조(소형 유·도선)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형 유선” 및 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형 도선”이란 각각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 중 관할관청이 해당 영업구역의 수심(水深)·수세(水勢)·운항거리 등을 고려하여 승객 등 승선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선박을 말한다.

효성이 저하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안전점검 결과도 기록·관리하도록 의무화 하고, ② 낙시어선 등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 노출에 취약한 유·도선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박의 크기 제한 없이 유·도선사업자 및 선원 뿐만 아니라 승객에 대해서도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며, ③ 유·도선사업자 등의 금지행위로 면허를 받지 않은 유선장·도선장에 유·도선을 매어두는 행위와 승객을 승선·하선시키는 행위를 추가하고, ④ 차량을 운전하는 도선에 대하여 엔진 정지 여부, 적재 후 차량 탑승 금지, 승선·하선 질서 유지 등의 조치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선박에서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4. 유·도선사업자 안전관리대책 수립 의무 및 안전관리자 지정 제도 도입 등

개정안은 ① 시·도지사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 매년 수립·시행한 유·도선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유·도선사업자가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② 유·도선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안전관리자 지정제도를 도입하며, ③ 도선에 차량 및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적재신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21조의2, 제25조 및 제25조의2).

현행	개정안
제21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② (생략) <u><신설></u>	제21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유·도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유·도선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u><신설></u>	④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안전관

현행	개정안
<u><신 설></u>	<u>리대책의 수립 시기 및 승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제21조의2(안전관리자) ① 유·도선사업자는 유·도선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u> <u>② 유·도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지정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1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알려야 한다. 안전관리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u> <u>③ 유·도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가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이 실시하는 유·도선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정면허를 받은 유선사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안전관리자가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u> <u>④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u>

현행	개정안
제25조(출항·입항의 기록·관리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선박을 운항하는 유·도선사업자는 그 선박에 승선하는 승객이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선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유·도선사업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선하려는 승객의 신분과 제2항에 따른 승선신고서 기재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출항·입항의 기록·관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선박을 운항하는 유선사업자는 그 선박에 승선하려는 승객이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선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제1항에 따른 선박을 운항하는 도선사업자는 그 선박에 승선하려는 승객 또는 적재하려는 물건의 운송의뢰인이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선신고서 또는 적재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유선사업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선하려는 승객의 신분과 제2항에 따른 승선신고서의 기재내용을 확인하여야 하고, 도선사업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선하려는 승객의

현행	개정안
④ 유·도선사업자는 승객이 <u>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승선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른 신분확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선을 거부하여야 한다.</u> ⑤ 유·도선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승선신고서를 3개월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25조의2(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25조에 따른 출항·입항의 기록·관리 및 <u>승선신고서</u> 작성·제출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생략)	<u>신분 또는 적재하려는 물건과 제2항에 따른 승선신고서 또는 적재신고서의 기재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u> ④ 유·도선사업자는 승객 또는 물건의 운송의뢰인이 <u>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승선신고서 또는 적재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른 확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선 또는 적재를 거부하여야 한다.</u> ⑤ 유·도선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승선신고서 또는 적재신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25조의2(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 ----- ----- <u>승선신고서·적재신고서</u> ----- ----- ----- -----. ②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① 시·도지사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하여금 매년 유·도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② 유·도선에 승선하는 승객으로 하여금 승선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며 미이행 시 유·도선사업자가 승선을 거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① 업체의 영업구역에 따라 그 특성(수심·수세·기상상태 등)이 다양한 점을 고려하여 유·도선사업자에게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② 위험요인 발견 시 현장에서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유·도선사업자로 하여금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안전관리자가 관할관청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며, ③ 선박에 적재되는 중량을 파악하여 선박의 복원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차량 및 화물에 대한 적재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승선신고서 및 적재신고서의 보관 기간을 선박 규모, 운항 거리 등 유형에 따라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하기 위해 시행령에 위임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됨.

다만, 안전관리대책의 수립 및 안전관리자 지정제도 도입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사항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은 한정면허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특정 목적을 위해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단기간만 사업을 영위하는 한정면허

의 경우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할 것으로 보이며, 소규모 영세 유·도선 사업자의 경우에도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매년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대책 수립을 여건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모든 경우에 수립 의무를 부과하기보다는 대책 수립이 반드시 필요한 범위를 정하여 규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보임.

둘째, 현행법은 유·도선사업자, 선원, 그 밖의 종사자는 유·도선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유·도선사업자는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선원 및 종사자를 근무하게 하는 것을 금지⁶⁾하고 있음.

이러한 유·도선사업자와 선원 등에 실시하는 안전운항 교육은 유·도선사업자과 선원 등에 실시하는 유도선의 안전운항 교육은 운항규칙 등 수상교통의 안전에 관한 내용과 생존기술, 응급조치, 인명구조용 장비 사용법 등 수난구호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유·도선사업 및 유·도선의 안전운항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⁷⁾됨.

6)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4조(유·도선사업자 등의 안전교육) ① 유·도선사업자, 선원, 그 밖의 종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도선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유·도선사업자는 선원 및 그 종사자가 교육을 이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선원 및 그 종사자를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안전교육과목 등) ①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유·도선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교육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항규칙 등 수상교통의 안전에 관한 과목
2. 생존기술, 응급조치, 인명구조용 장비 사용법 등 수난구호에 관한 과목
3. 그 밖에 유·도선사업 및 유·도선의 안전운항에 관하여 필요한 과목

이와 같이 현행법령에 따라 유·도선사업자와 선원 등에 대해 안전운항 및 구호에 관한 안전관리교육이 의무화되어 있고, 교육 미이수자는 업무를 배제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다는 점, 여객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유·도선의 특성을 고려할 때 안전관리자의 추가 지정은 유·도선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안전관리자 지정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그 실익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유선 및 도선의 예시]

		
노 보트(유선)	황포돛배(유선)	잠수정(유선)
		
쾌속 도선	사람승선 유형 도선	차량적제 유형 도선

5. 유·도선 현대화계획 수립·시행 및 선정기준 적합성 심사 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

개정안은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하여금 유·도선 현대화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② 면허의 발급 및 변경을 위해 유·도선의 선정기준 적합도에 관한 검사 및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0조 신설 및, 제38조).

현행	개정안
<신설>	제30조의3(유·도선 현대화계획)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유·도선 현대화를 위한 계획(이하 “유·도선 현대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유·도선 현대화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유·도선 현대화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	개정안
제38조(권한의 위임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관할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에 따른 검사업무 및 제24조에 따른 교육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관할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또는 그 밖의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4조의2제1호에 따른 유선 또는 도선의 선령 기준 적합성 심사 업무 2. 제20조에 따른 안전검사 업무 3.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 업무 4. 제24조에 따른 유·도선사업자 등의 안전교육 업무 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먼저 유·도선 현대화계획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현행법은 유·도선의 안전검사 및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장기적인 안전 확보 및 발전방안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유·도선의 선령추이, 이용객 분포도 등 통계 관리를 통한 산업 발전정책 추진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하여금 5년마다 유·도선 현대화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유·도선 산업의 장기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유·도선의 지속적인 현대화를 통해 안전이 담보된 선박 운항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긍정적인 입법조치로 생각됨.

참고로 「해운법」에서도 내항여객선 현대화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장기적인 여객선 산업의 발전 및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있음.

[유사 입법례: 「해운법」 내항여객선 현대화계획]

「해운법」 제37조의2(내항여객선 현대화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여객선 현대화를 위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내항여객선 현대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여객선 현대화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내항여객선 현대화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음으로 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현재 선정기준을 초과한 유도선을 계속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선박검사기관으로부터 선정연장을 위한 선박검사를 매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업무를 선박검사기관에 위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자가 검사를 선박검사기관에 바로 신청하지 못하고 관할관청에 신청하면 관할관청이 선박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는 절차의 복잡성이 문제되고 있음.

[선정기준 적합성 검사 신청 절차]

현 행	개 선 후
- ①사업자 신청⇒②관할관청 의뢰⇒ ③선박검사기관 접수·결과통보	- ①사업자 신청⇒ ②선박검사기관 접수·결과통보

이에 개정안은 선정기준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업무를 선박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추가적으로 개정안은 안전관리자 지정제도를 도입하면서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 업무의 위탁 근거도 함께 마련하고 있는데, 현재 유·도선사업자 등 관련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안전관리자 지정제도의 도입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임.

6. 보험 가입 의무 강화, 벌칙 및 과태료 규정 정비 등

개정안은 ① 유·도선사업자의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무 위반 시 관할관청의 개선명령 규정을 삭제하고 바로 형벌을 부과하도록 하며, ② 안전관리대책 미승인 및 안전관리자 미지정에 대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④ 개정사항 중 경미한 조치 위반 등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7조, 제41조 및 제43조).

현행	개정안
제27조(개선명령 등) 관할관청은 유·도선의 안전사고 예방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도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제27조(개선명령 등) ----- ----- -----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9. 제33조에 따른 보험 등에의 가입	<삭제>
10. (생략)	10. (현행과 같음)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벌칙) ----- ----- ----- -----.

현행	개정안
1. 2. (생략) <u><신설></u> <u><신설></u> 3. (생략) <u><신설></u>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1항, 제12조제4항, 제12조제5항제10호, 제15조제2항, 제16조제4항, 제18조제1항제7호, 제23조제2항, 제24조의2제1항, 제25조, 제29조제1항, 제31조제2항, 제34조제1항·제2항 또는 제35조를 위반한 자 2. 제13조제2항(제1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1. 2. (현행과 같음) 2의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도선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2의3.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3. (현행과 같음) 4.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유선사업자 또는 도선사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 사업 재개 또는 운항 재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선 또는 도선의 안전을 점검하지 아니한

현행	개정안
3. 제12조제2항 또는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에 관한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하여 비치하지 아니한 자	거나 점검결과를 기록 또는 관리하지 아니한 자 4. 제12조제2항 또는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에 관한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하여 비치하지 아니한 자 5. 제12조제4항 또는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6. 제12조제5항제10호 또는 제18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수상에 유류·분노 또는 폐기물을 버린 자 7. 제12조제5항제12호 또는 제18조제1항제9호를 위반하여 사업의 면허를 받은 유선장 또는 도선장이 아닌 곳에 유선 또는 도선을 매어둔 자 8. 제12조제5항제13호 또는 제18조제1항제10호를 위반하여 사업의 면허를 받은 유선장 또는 도선장이 아닌 곳에서 승객을 승선 또는 하선시키거나 물건을 싣거나 내린 자 9. 제13조제2항(제19조제2항에

현행	개정안
	<u>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을 위반한 자</u> 10.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객의 출선 요구를 거부하거나 출선을 지연시킨 자 11.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운항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2.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 지정 또는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13.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소 안에 선원 명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14.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비상상황 대비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15.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의 출항 또는 입항에 관한 사항을 기록 또는 관리하지 아니한 자 16.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객 또는 물건의 운송의뢰인에게 승선신고서 또는 적재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현행	개정안
	17.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 <u>선하려는 승객의 신분 또는</u> <u>적재하려는 물건과 승선신고</u> <u>서 또는 적재신고서의 기재</u> <u>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한 자</u> 18.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 <u>선신고서 또는 적재신고서를</u> <u>작성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거</u> <u>나 유·도선사업자의 확인</u> <u>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승객</u> <u>또는 물건의 운송의뢰인에</u> <u>대하여 승선 또는 적재를 거</u> <u>부하지 아니한 자</u> 19.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승 <u>선신고서 또는 적재신고서를</u> <u>보관하지 아니한 자</u> 20.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 <u>고발생의 보고를 하지 아니</u> <u>한 자</u> 21.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 <u>항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한</u> <u>자</u> 22.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 <u>항약관 신고 또는 변경신고</u> <u>를 하지 아니한 자</u> 23.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현행	개정안
② (생략)	<u>위반하여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u> 24. <u>제35조를 위반하여 요금 등을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지 아니한 자</u> ② (현행과 같음)

먼저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현행법은 미가입자에 대해 개선명령을 부과하고, 개선명령 위반 시 면허취소, 사업의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가입의무 위반에 대하여 바로 벌칙규정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규제를 강화하였음.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무는 유·도선 운항 중 사고로 인하여 승객, 선원, 그 밖에 종사자들이 입은 피해의 보상을 위한 것으로, 승객의 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위반 시 형벌보다 현행법처럼 행정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임.

참고로, 최근 행정안전부는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안전 등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출⁸⁾하여 현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다음으로, 현행법은 유·도선 사업자의 운항 제한 조치를 위반한 운항 및 안전운항 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벌칙규정 적용대상에 개정안의 개정사항인 안전관리대책의 수립·시행 및 안전관리자 지정 의무 위반을 추가하려는 것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법 체계 하에서 유·도선사업자, 선원, 그 밖에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이 이미 실시되고 있어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안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 개정안은 안전관리대책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영세한 소규모 유·도선 사업자의 경우 인력 및 재정상 한계로 이를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안전관리대책 미수립 및 안전관리자 미지정에 대하여 바로 벌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어 보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마지막으로 과태료 규정의 정비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① 사업자 지위 승계 미신고, ② 안전점검 결과를 기록·관리하지 않은 경우, ③ 면허를 받은 유선장 또는 도선장이 아닌 곳에 선박을 매어 두거나 승선 또는 하선시킨 경우, ④ 차량 운송 도선사업자의 조치의무 위반, ⑤ 안전관리자 지정·변경 사실 미통보 등 개정사항

8)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소방시설공사사업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2024. 7. 25. 정부제출, 의안번호 제2202262호)

중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의무 이행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생각됨.

문 의 처
02)6788-5349